

개정 전	개정 후
<p>다)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]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</p>	<p>제21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</p>
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,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, <u>제13조의3</u>, <u>제14조</u> 및 <u>제15조</u>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장에서 “산출세액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</p>	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삭 제</p>	<p><삭 제></p>
<p>3. <u>제13조의2제1항제2호에</u> 따라 <u>일시적 2주택으로</u> 신고하였으나 그 <u>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</p>	<p>②·③ (생 략)</p>